

대법원 2020. 9. 24 선고 2020다223835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9. 24 선고 2020다223835 판결

서울고등법원 2020. 1. 17 선고 2019나2001556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4. 망 D의 소송수계인

가. AO

나. AP

다. AQ

라. AR

마. AS

원고, 피상고인바. AT

사. AU

아. AV

자. K

원고, 피상고인 겸 상고인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11. K

12. L

13. M

14. N

15. O

16. P

원고 1 내지 3, 5 내지 16 및 원고 4의 가, 바 내지 자의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양현 담당변호사 이호철, 김지영

법무법인 경성 담당변호사 김형석

피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주식회사 Q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동인

담당변호사 원창연, 임화선

판결 선고2020. 9. 24.

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. 1. 17. 선고 2019나2001556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 중 원고 AP, AQ, AR, A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,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각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의 가치가 피고와 주식회사 R이 양도대금으로 합의한 1억 1,000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피고가 양도대상의 통상적 운영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대상 가액이 양도대금 상당인 1억 1,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.

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증명력, 상법상 영업양도 및 영업의 중요부분 양도, 피고의 악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,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, 이유모순,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 중 원고 AP, AQ, AR, AS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,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안철상

대법관박상옥

대법관노정희

주심대법관김상환